

보도시점 6. 26.(목) 석간 < 6. 26.(목) 06:00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 (재투자) 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 (회수)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곽재경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박혜정	(044-204-7722)
			주무관	모규영	(044-204-7733)

현행	개정안
<p>제5조(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p>	<p>제5조(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u>다만,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u></p>
<p>[별지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배분원칙) ① ~ ③ (생략) ④ <u>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배(배분)금액 및 시기는 조합원의 동의로 정한다.</u></p>	<p>[별지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배분원칙) ① ~ ③ 동일 ④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u></p>
<p>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p>	<p>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5조제6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p>
<p>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② (생략)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u>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u>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u>영 제35조제7항제3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u>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